

인천지방법원 2024. 3. 13 선고 2023가단307894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2. 21.

판 결 선 고 2024. 3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73,265,620원 및 그 중 168,389,408원에 대하여 2023. 11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.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73,265,620원 및 그 중 원금 168,389,408원에 대하여 2023. 11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4.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김수영

별지